

01

도급사업 단계별 안전보건활동 내용

1. 목적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의무를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공동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수급인 사업장은 사업규모의 영세성, 도급인 사업장 내에 작업장소가 있는 등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장 간 상호협력과 도급인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를 위해서 도급계약 시 도급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과 수급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한 사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 “도급인”이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업체를 말한다.
- “수급인”이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 “도급 계약”이란 수급인이 어느 업무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업무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4. 도급 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① 도급인은 법 제30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해 적정하게 지급,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비는 도급인이 직접 집행하거나, 수급인에게 일정금액을 배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안전관리비를 수급인에게 배정할 경우 공사특성, 난이도,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배정 요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배정된 안전관리비에 대해 실행예산서를 편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안전관리비의 추가 배정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에게 추가 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가 배정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교육

-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위험성평가

- ①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②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① 도급인의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
-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5) 안전보건 점검

- ① 도급인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② 도급인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적 근거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6) 공사기간 등 준수

- ①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하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작업환경

- ①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② 도급인의 사업주와 수급인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Tip! 위생시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의6(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고용노동부령(법 제29조제9항)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8) 안전보건 조치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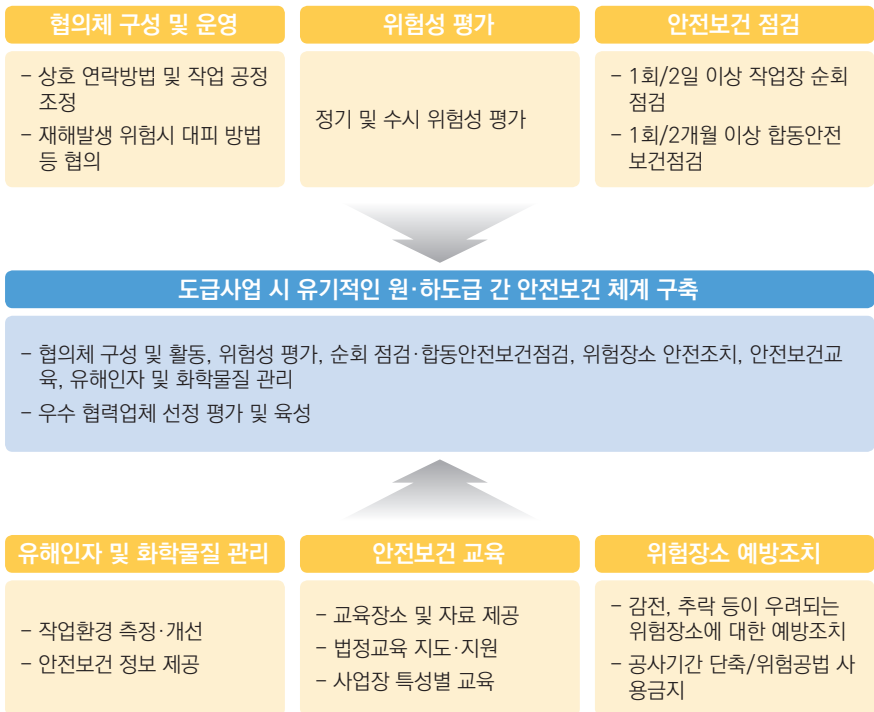
- ①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02

도급사업 보건활동 체계

1. 도급사업 수행 시 보건활동을 위한 구성요소

- 도급사업 수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급인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산재발생 위험장소 예방조치, 수급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함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구성요소〉

2. 유기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방법

수급인과 함께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이 필요함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① 현장 안전보건 방침 명확화

- 회사의 안전보건방침, 공사 특성,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등에 기초하여 현장 안전보건방침 수립·공표
-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장 직원 등 조직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책임·권한) 명확화
- 각 수급업체를 포함한 현장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 주지

② 현장 안전보건활동 계획수립

- 현장 안전보건목표 달성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실행
- 일정기간(월/주간) 단위공사(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중점관리 위험요소를 관리하도록 담당자, 조치기간 등 세부계획을 수립
- 공정회의,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의 의사소통을 통해 안전보건활동을 논의하여 결정

③ 공사 수행자 모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의 실행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각 수급업체 공사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되, 수급업체 해당공사 수행자 참여
 - 위험성평가 시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위험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 및 평가
 - 현장소장은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승인
 - 공정회의,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을 통한 시공과 안전 간 상시 의사소통

④ 적극적 의사소통 추진

- 현장 내 모든 수급업체 소장들이 포함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 매월 1회 이상 공정과 연계된 안전회의 실시
 -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혼재 시는 상시 안전회의 실시
 - 위험성평가의 목표관리 사항(중점관리 위험요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 조치계획 명확화
 - 현장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혼재 작업이 다수 진행될 경우 안전회의를 수시 개최, 작업 공정 간 위험에 대한 소통 및 위험작업의 시기조정
- 위험성평가를 기본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현장 조치실태를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실시
 - 점검 시 도출된 위험요인 중 즉시 개선, 다음날 오전까지 등 시점으로 구분하여 반드시 추적 관리
-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에서 논의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도급과 수급업체 간 합동안전보건 점검을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점검 시 도출된 사고 발생위험은 반드시 개선·환류 활동 실시

⑤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 교육대상자, 내용, 실시시기, 강사, 실행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 수립
-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 위험성평가 내용과 그 밖에 안전보건관련 사항 교육 실시
- 근로자 정기교육 등 법정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급업체 또는 근로자를 실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주관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집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예산을 해당 현장에 적합하게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각 수급업체에 적절하게 배분
 -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

⑦ 산업재해예방 활동 추진

-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보건협의체회의에서 논의된 중점 위험요인과 대책에 따라 수급업체가 적절히 안전관리 활동을 하도록 지원

- * 추락, 낙하·비레, 붕괴·도괴, 감전, 화재·폭발 예방 등
-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장비·설비·자재 등이 공사현장에 반입될 경우 보험, 등록증, 자격증 등 필요서류를 검토하여 사전 안전성 확보
- 근로자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해 정기적 건강진단 실시 및 적절한 위생시설 설치
-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계획→실시→평가→개선」의 과정을 시공·품질·공정·노무관리 등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관련체계와 일체가 되어 적기에 실행되도록 관리
- 수급업체의 재해예방활동 능동적 참여 추진
 - 안전보건관련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자체 선임토록 유도
(안전 보건 총괄(관리) 책임자(법 제13조, 영 제9, 24조, 규칙 제11, 14조 : 총공사금액(관급, 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 대상)
 - 수급업체가 매 작업일 작업 개시 전에 신규 근로자와 당일작업 근로자 명단 및 반입 기계·장비·설비 등을 보고
 - 수급업체가 작업사항을 파악,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관리
-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처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비상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및 대책 수립, 현장 구성원에게 훈련 실시

⑧ 수급업체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속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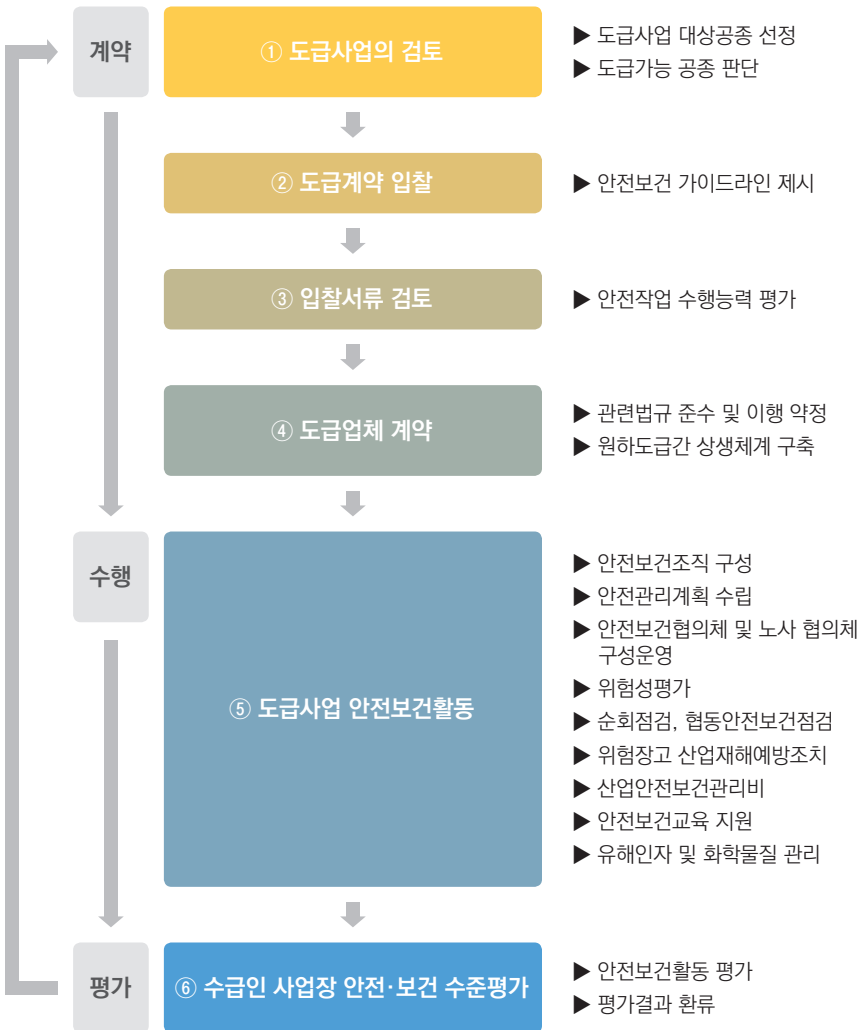
- 현장의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계획이 적절하게 달성되고 실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공사 시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우수 수급업체를 선정·육성하기 위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
 - 단계별 안전보건활동에 조직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각 수급업체의 참여도를 평가

⑨ 수급업체 작업관련 보고 및 허가사항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가 일체가 되어야 하며,
 - 도급업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수급업체의 이행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 일일 작업일보, 출력일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유해위험 기계기구 반입허가서, 위험성 평가표, 용접작업 등 위험작업허가서, 난방기구 사용 허가서, 야간작업 허가서 등

3. 도급사업 단계별 검토·수행해야 할 안전보건활동

도급사업 운영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단계별 안전보건활동 구성요소>

03 도급사업 단계별 안전보건활동 내용

1. 도급사업 계약 시

- 입찰/계약 단계에서의 수급업체 안전수준 확보
 - 본사차원의 심사(평가결과표에 의한 입찰제한 실시, 안전사고이력관리 평가)
 - 현장차원의 심사(인터뷰를 통한 안전보건마인드 평가)
-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 관련 활동상황을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입찰단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등 「도급계약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1회/2일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 1회/2개월 이상 합동안전보건점검

계약단계

「도급계약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도급 계약 시 도급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과 수급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함

- 현장 개설시 법규 준수 및 이행사항에 대한 약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안전시설, 개인보호구 등)
 - 안전작업계획서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 협의체회의, 순회점검 등 안전활동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Tip! 안전부문 현장설명 및 입찰기준 내용 예시

- 배상책임보험 가입조건
-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기준
-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위험성평가 실시
- 개인보호구 및 복장 착용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및 역할
- 신규채용자 관리 방법
- 공도구 반입 및 사용조건
- 장비 및 가설기자재 관리

- 건설현장의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 구축
- 건설현장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하도급 계약 시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를 구축하여 도급인의 지원 활동을 보다 능동적이고 명확히 하여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근로자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



Tip! 관리적 사항

- 도급업체의 지원 및 수급업체 참여활동
-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발대식 개최 및 파트너십 협약체결 계획

▶ 재해예방활동

- 일상적 안전보건활동 계획의 적정성
- 수급업체 지원계획의 적정성
- 수급업체 근로자 사기진작 방안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평가계획)

▶ 본사 지원사항

- 본사차원의 지원방안 수립 및 예산지원
- 본사 안전전담 부서의 현장점검 사항
- 수급업체의 참여정도 평가 계획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2. 도급사업 수행 시

1)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 구성 지원

- 시공단계에서 먼저 도급업체 조직을 기반으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작업팀장) 등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각 조직별 역할과 책임 부여
 - 안전보건에 관한 임무가 포함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개인별 서명확인을 통해 문서화
 - 위험성평가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실시반을 구성하여 역할과 책임을 부여



수급업체 조직별 역할과 책임 부여시 고려할 사항

- 현장 안전보건활동 운영 지원
- 위험성평가서 작성, 중점 위험요인 개선조치 및 유지관리
- 위험성 평가회의 참석
- 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훈련
-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

2) 수급업체의 시공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의 해당공사 착공 전 시공계획을 반영하여 최초 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현장 안전보건 목표와 설정기간에 맞추어 구체적 계획을 검토하여 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수립하고 관리
 -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목표의 달성상황, 공정상황, 공법의 변경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리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

- 안전보건방침 및 핵심 추진과제
- 안전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 안전보건 교육계획
- 최초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공정, 공종별 재해예방 대책
- 안전보건활동 계획(월간 안전보건활동 계획 및 1일 안전 Cycle)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개인보호구 지급계획 포함)
- 기타 안전보건 관리사항

3) 작업장의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순회점검 실시
- 현장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도급 사업주가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수급업체의 안전 보건활동을 지원하고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재발생 위험을 제거함
- 수급인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도급인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사업주 의무이나,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 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능
-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4)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

-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 (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 1명
 - * 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
 - ** 해 당 공정 근로자만 해당(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각 수급인 소속 근로자 1명씩 점검에 참여하며, 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공정의 합동점검만 참여 가능)
- (점검주기) 2개월에 1회 이상

5) 작업장의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순회점검 실시
- 현장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도급 사업주가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수급업체의 안전 보건활동을 지원하고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재발생 위험을 제거함
- 수급인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도급인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6)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실시
-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의 시설물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수급인의 단독적인 재해예방 노력만으로는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지 않더라도 도급인의 사업장 내려면 수급인 근로자가 일하는 위험장소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아울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의무는 일차적으로 수급인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수급인 또한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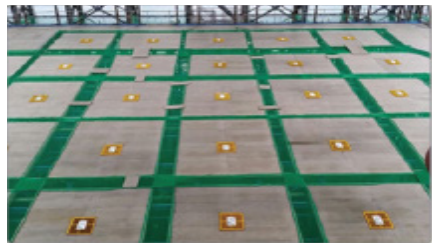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를 현행 “20개소”에서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중임

산재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20개)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장소
- 가. 선박 내부 나. 특수화학설비 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
10.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18.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1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20.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소화 장비함 시설 설치



슬립품 대형개구부 덮개 설치



근로자 안전 이동통로 설치



수상 인명구조함 설치



흙막이 가시설 보강재 설치 및 뒷채움 실시



슬립폼 안전난간대 및 행인데크 안전망 설치

〈위험장소 안전조치 예시〉

8)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9항]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지급받은 도급업체는 수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목적외 사용, 사용내역 미작성 등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 이상 또는 사용내역 작성의무 위반시 PQ(입찰참가자 격 사전심사) 감점(건당 -0.5점, 최대 -1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적용대상

- 공시금액 4천만원 이상

□ 계상기준

-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대상액 ×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 × 비율 + 기초액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계상

※ 대상액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

(단위 : 원)

구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기초액		
일반건설공사 (갑)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 (을)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궤도 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항목	사용 불가 내역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안전 · 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안전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영 별표3 제41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 ·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 · 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 · 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 ·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 · 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 · 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다. 안전 · 보건보조원의 인건비 1) 전담 안전 ·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2) 보조원이 안전 · 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 · 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2. 안전시설비 등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 · 주의 · 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 · 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 · 수리 및 설치 · 해체 비용 등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 통로, 사다리 등

항목	사용 불가 내역
2. 안전시설비 등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 · 통로 · 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 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 · 설비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나. 소음 · 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1)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 · 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 2) 도로 확 · 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 · 주의 · 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 공사안내 · 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 · 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 다. 기계 · 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등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2)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제3호 관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 · 후생적 근무여건 개선 · 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 · 수리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안전 ·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 ·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등 ※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2)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항목	사용 불가 내역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제7조제1항제4호 관련)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의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정기·구조변경·수시·확인검사 등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 다.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라.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 마.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 사.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임차 비용 ※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또한 사용할 수 없음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제7조제1항제5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해체·운영비용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에 교육장 설치 등이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나.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라.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항목	사용 불가 내역
5. 안전보건교육 비 및 행사비 등 (제7조제1항제5호 관련)	마.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 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신문 구독 비용 ※ 다만,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60%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2)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3)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지원제 행사비 1)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지원제 2)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기도비용 등을 말한다) 3)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4) 산업안전보건교육식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기구·약품 등 1) 간식·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샤워시설 ※ 분진·유해물질사용·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3) 혹서·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보약 구입비용 ※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4)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5)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 다만,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 나.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한다)

항목	사용 불가 내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다.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방충비용 라.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가. 본사에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10)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31조의2]

-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에게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업체가 법적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알려 주어야 함

산업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함(4시간)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건설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특별교육(유해·위험작업 종사 근로자)
 -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안전보건교육 지원 예시

- 수급업체가 동참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
 - 지원내용 : 교육장소, 교육 기자재(컴퓨터, 빔 프로젝트 등), 안전교육 교재 등
 - 도급사(공사팀장, 안전관리자)와 수급사(관리감독자, 작업책임자)가 공동으로 실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신규채용시 교육을 면제받게 되며, 교육비용은 사업주가 지급하며,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함

11)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제42조]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명칭·성분 및 함유량, 응급 조치요령, 안전·보건상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자료임
 - ※ 건설현장 취급 화학물질 예시 : 시멘트, 유기용제, 페인트, 방수제, 접착제, 용접봉 등
 - 각 주체별 조치사항
 - (제조·수입자)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안전·보건상 주의사항 등 16가지 항목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사업주)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도급인 및 수급인은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갖춰두어야 함
 - (교육) 화학물질을 취급·사용하는 근로자를 교육하여야 함
 - ※ 교육내용 :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작업요령, 보호구 착용,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등

3. 도급사업 평가 시

1)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 수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평가를 통해 수준향상 유도
-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 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수급업체별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2)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관리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포상 또는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 ※ 우수한 수급업체를 선정·육성하는 일은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
- 평가를 통해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수급 사업장 지원방안 수립에 활용
 - 현장 평가의 최종 책임자는 현장소장이지만 평가의 공정 및 적정성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공사담당자 등의 의견 청취 및 반영
 - ※ 평가사항,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 후의 보고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은 본사에서 절차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있음



Tip!

수급업체 안전부문 평가 예시

- 평가 대상 : 외주 및 안전시설 공사업체의 안전관리 능력평가
 - 평가 종류 : 안전활동 평가, 재해발생 평가
 - 시기 : 본사 또는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함(년 2회 이상)
 - 평가부서 : 1차 공사현장, 2차 본사 안전팀
 - 평가항목 : 시스템, 현장 안전활동 운영실태(추락, 협착 등), 재해(산재) 발생 여부
 - 등급단계 : 우수 > 양호 > 보통 > 불량 등
- ※ 평가 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등급 부여, 차기 입찰점수에 반영하여 우수 수급업체 인센티브 부여



04

타검설회사 우수사례

우수사례 1 안전우수 협력업체 인센티브 부여

주요내용

① 안전관련 지원

- 안전우수 협력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 인센티브 부여
 - 매 년 안전·보건분야 우수 수급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인센티브 부여
⇒ 년 2개사만 선정함으로써 실질적 안전관리 강화 유도
 - 우수 협력업체 평가 시 상시 예방활동 반영(100점 만점 중 10점 가점 부여)
⇒ 전문건설업 KOSHA 18001 인증 시 : +5점 가점
⇒ 수급업체 본사 안전·보건조직 확보 : +5점 가점
- 안전혁신학교 운영
 - 협력업체 안전혁신 마인드 강화를 위한 체험교육(1박2일, 무료)

② 기술지원 및 기술보호

- 신기술 공동개발
- 공동 특허 / 디자인 출원 지원

③ 경영지원

- 원자재 제공(사급제도)
 - 도급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한 협력업체의 주요품목을 구매 대행 후 지급(가격변동 위험 저감)
- 해외 동반진출 지원(해외 마케팅 지원)
 - 협력업체에 대해 준비단계별 해외진출 지원제도 운영(해외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

주요내용

- 스마트폰(Mobile)을 이용한 안전보건 관련 정보 공유
 - 잇차사고 발굴·공유, 안전보건관련 질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교류

예시1)



Near Miss 게시판에 공지



안전관리자 및 협력사 통보



해당업체에서 조치 및 보고

예시2)



안전 관련 질문 등록



안전관리자가 답변 등록



질의자에게 자동 통보

우수사례 3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안전활동

주요내용

- 단계별 안전활동 참여 유도

(1단계) 위험성평가 활동 지원 → (2단계) Near Miss(앗차사고) 발굴 및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수급근로자 참여 유도 → (3단계) 복지 및 감성 지원 등을 통한 자율참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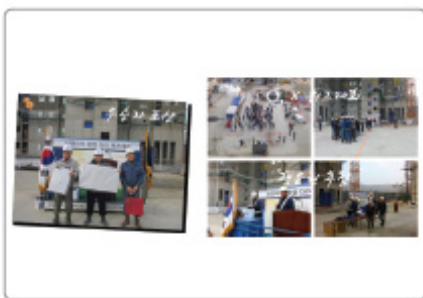
예시



Near Miss 발굴자 포상



안전스트레칭 기구 배치



안전의식 향상 O, X 퀴즈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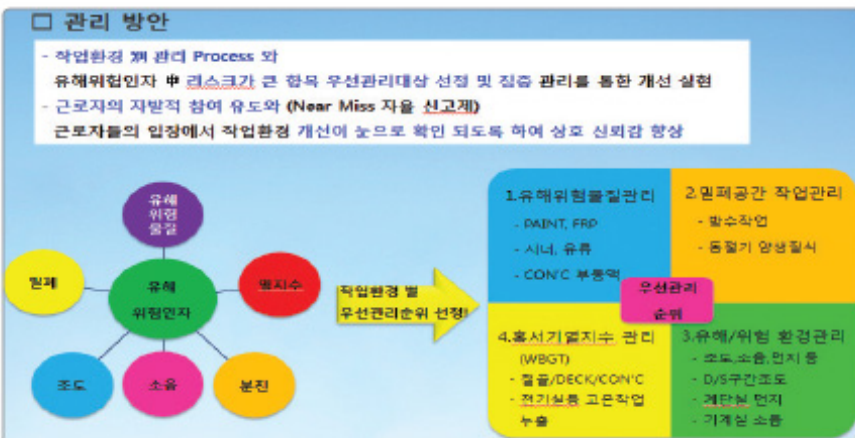


근로복지 시설 및 활동

주요내용

- 체계적인 일용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 현장 내 건강관리실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유해인자 모니터링 실시
 -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분위기 향상

예시



우수사례 5 보호장구류 관리

주요내용

- 효율적 근로자 관리를 위한 안전모 스티커 제공
 - 공종별 안전모 색상 구분지급, 교육이수 스티커 발급
- 줄걸이 점검 및 수공구 관리 체계 확립

예시



안전모 지급 및 교육이수 확인 스티커



줄걸이 및 수공구 점검 스티커

[근로자 투입 관리 측면] 신규 근로자 출력 시 보건관리

1. 건강 Risk 사전 검증 (Screening)

- 위험군 근로자 파악
 - 취약계층 사전 투입 신청 · 승인
 - : 고령자(65세이상), 질병 유소건자, 미숙련공(3개월미만)
- 신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Medical check(고혈압, 당뇨 확인)
 - 건강문진표작성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군, 고도비만, 저체중, 과도한음주, 흡연자, 질병 유소건자 확인)

2. 위험군 관리기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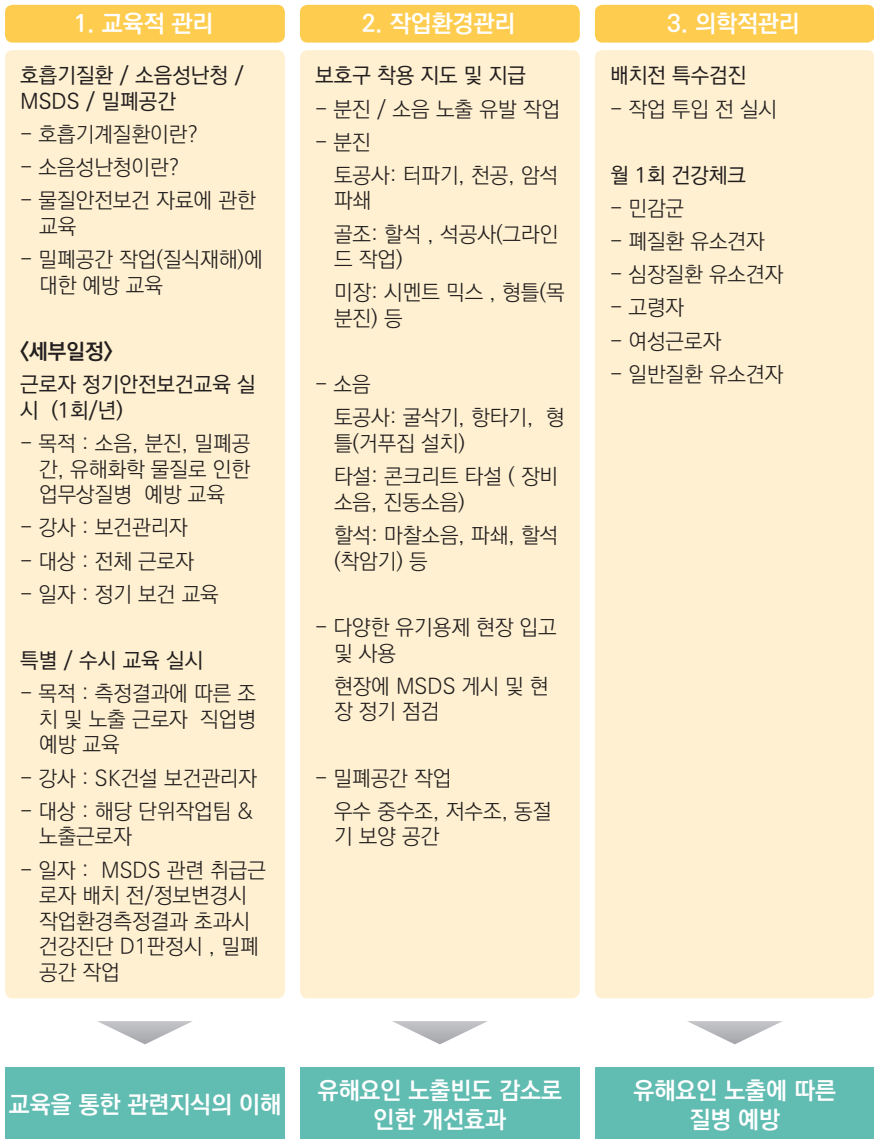
- 고위험군 유해위험작업 투입 제한
 - 고소 / 밀폐 / 야간 / 장시간 작업제한
 - 업무적합성 평가결과 확인 후 투입
- 중등도 / 저위험군 투입 및 건강관리
 - : 고혈압, 당뇨 등 질병보유자 의사소견서 제출 및 약복용 상태 확인

3. 위험도별 건강관리

- Medical check & 건강문진
 - : 고위험군 초접근관리 (1일 1회 또는 주1회)
 - 중등도 / 저 위험군 정기관리 (월 1회)
- 작업 투입 관리
 - : 건강상태 및 작업조건 변화 시
 - 조건부 근무 또는 작업전환

위험성 평가 협의체 회의 시 협력업체에게 지속적으로 현장 신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대해 공지 함.

[작업환경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작업환경 개선 Program





우수사례 7 미세먼지 관리

미세먼지 관리

기타 관리

마스크 지급 및 착용



미세먼지 관리

기타 관리

BAND 활용 공지



매우나쁨



나쁨

기타 관리

미세먼지 유해성 교육



미세먼지 유해성 교육



마스크 착용 교육

점검 포인트

- 업종 · 규모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및 직무수행 여부
- 안전 ·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여부
- 도급인 사업주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 · 보건점검 및 작업장 순회점검 여부
- 도급사업의 도급인 사업주, 수급인 사업주, 근로자 등의 합동 안전 · 보건점검 여부
-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 · 보건관리에 대한 지원 · 지도 이행 여부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제공하거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협조 여부

부록 01 건설업 근로자의 건강 관련 기술지침

기술지침(KOSHA GUIDE) 목록

연번	개발년도	지침(KOSHA-Guide) 명칭
1	C-1-2011	시스템폼(RCS폼, ACS폼 중심) 안전작업 지침
2	C-3-2011	교량공사(P.S.M공법) 안전작업 지침
3	C-15-2011	관로매설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4	C-17-2011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5	C-19-201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설계 지침
6	C-21-2011	현수교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7	C-22-2011	사장교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8	C-24-2011	단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안전보건작업 지침
9	C-27-2011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10	C-28-2011	이동식 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
11	C-32-2011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12	C-34-2011	소규모 철근콘크리트 교량공사 거푸집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13	C-35-2011	교량공사의 이동식 비계공법(MSS) 안전작업 지침
14	C-36-2011	교량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치 안전작업 지침
15	C-37-2011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16	C-38-2011	슬립폼(Slip form) 안전작업 지침
17	C-39-201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18	C-40-2011	갱폼(Gang form) 제작 및 사용안전 지침
19	C-41-201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교량공사 안전작업 지침
20	C-42-2011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21	G-74-2011	작업장 내 '약자' 괴롭힘(Bullying) 방지를 위한 지침
22	H-36-2011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조기대응 지침
23	H-37-2011	근로자의 우울증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용 지침
24	H-38-2011	직무스트레스의 일상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용 지침
25	H-39-2011	직무스트레스 자기관리를 위한 근로자용 지침
26	H-40-2011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H-90-2012	형틀목공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C-2-2012	수상바지(Barge)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4-2012	흙막이공사(업지말뚝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7-2012	시트(Sheet) 방수 안전보건작업 지침
	C-9-2012	관로매설공사(유압식 추진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11-2012	가설계단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

연번	개발년도	지침(KOSHA-Guide) 명칭
	C-12-2012	흙막이공사(Earth Anchor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13-2012	흙막이공사(Soil Nailing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14-2012	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43-2012	콘크리트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C-45-2012	터널공사(NATM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49-2012	안전대 사용지침
	C-50-201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53-20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건축구조물 조립 안전보건작업 지침
	C-61-2012	터널공사(Shield T.B.M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62-2012	곤돌라(Gondola) 안전보건작업 지침
	C-63-2012	흙막이공사(C.I.P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65-2012	철골공사 무지보 거푸집동바리(데크플레이트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68-2012	블록식 보강로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69-2012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
	C-70-2012	냉동냉장 물류창고 단열공사 화재예방 안전보건작업 지침
	C-71-2012	기성 콘크리트 파일 항타 안전보건작업 지침
	C-72-2012	흙막이공사(지하연속벽) 안전보건작업 지침
	C-73-2012	강박스거더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G-36-2012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G-87-2012	고령근로자의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G-93-2012	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술지침
	H-65-2012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H-66-201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
	H-67-2012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지침
	H-68-2012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
	H-84-2012	건설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용 지침
	H-90-2012	형틀목공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G-12-2013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C-43-2013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C-75-2013	조경공사(수목식재작업) 안전보건작업지침
	C-76-2013	흙막이공사(강널말뚝, Sheet Pile)의 안전보건작업지침
	C-77-2013	현수교 주탑시공 안전보건작업지침
	C-80-2013	강아치교(벤트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C-81-2013	터널공사(프론트잭킹) 안전보건작업지침
	C-82-2013	현수교 및 사장교 주탑 기초공사(RCD 현장타설 말뚝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

연번	개발년도	지침(KOSHA-Guide) 명칭
	C-83-2013	PCT거더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
	C-84-2013	트러스거더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85-2013	트럭 탑재형 크레인(Cargo crane) 안전보건작업지침
	C-87-2013	중소규모 관로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C-88-2013	터널공사(NTR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C-89-2013	터널공사(침매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C-92-2013	흙막이공사(SCW공법)의 안전보건작업지침
	C-93-2013	우물통 기초 안전보건작업지침
	C-94-2013	교량공사(라멘교) 안전보건작업지침
	H-140-2013	건축물 등의 석면조사 지침
	C-95-2014	흙막이공사(띠장긴장공법, Prestressed Wale Method) 안전보건 작업지침
	C-96-2014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작성지침
	C-97-2014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C-98-2014	철탑공사 안전보건기술지침
	C-100-2018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기술지침
	C-101-2014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C-102-2014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C-103-2014	굴착공사 계측관리 기술지침
	C-104-2014	건설공사 굴착사면 안전기술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H-159-2014	호흡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H-160-2014	청력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C-6-2015	타일(Tile)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8-2015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C-18-2015	건설공사 안전보건 설계지침
	C-20-2015	비계 안전설계 지침
	C-44-2015	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51-2015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설치 안전보건작업 지침
	C-55-2015	금속 커튼월(Curtain wall) 안전작업 지침
	C-60-2015	탑다운(Top down) 공법 안전작업 지침
	C-74-2015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지침
	C-79-2015	초고층 건축물공사(일반사항) 안전보건작업지침
	C-91-2015	초고층 건축물공사(화재예방) 안전보건작업지침
	C-99-2015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
	H-73-2015	용접작업 보건 관리 지침
	H-172-2015	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연번	개발년도	지침(KOSHA-Guide) 명칭
	H-178-2015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C-5-2016	건설공사 돌관작업 안전보건작업 지침
	C-10-2016	I.L.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16-2016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33-2016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
	C-46-2016	발파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52-2016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66-2016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C-67-2016	F.C.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78-2016	옹벽(콘크리트 옹벽)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C-105-2016	굴삭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C-106-2016	덤프트럭 안전보건작업 지침
	C-107-2016	일반 화물자동차 안전보건작업 지침
	C-26-2017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C-29-2017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C-31-2017	추락방호방 설치 지침
	C-47-2017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C-54-2017	가공송전선로 철탑 심형기초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56-2017	리모델링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C-57-2017	건축물의 석공사(내외장)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C-59-2017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C-108-2017	건설현장 용접용단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C-109-2017	화학플랜트 개보수 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C-25-2018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C-30-2018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
	C-64-2018	조적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C-86-2018	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침
	C-90-2018	소규모 건축현장 시스템비계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C-100-2018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기술지침
	C-110-2018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
	C-111-2018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기술지침
	C-112-2018	장마철 및 혹서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기술지침
	H-9-2018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H-70-2018	석면 해체제거 작업 지침
	H-196-2018	건설업 비계공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부록 02 건설업 보건관리 업무 관련 Q&A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시행령 제16조 및 영 별표5)에 의거 공사금액 800억 이상(토목공사는 1,000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공사현장에 보건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사금액 800억 기준(토목 1,000억) 1,400억이 증가하거나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 될 때마다 1명씩 추가 선임하여야 함

Q1. 공사금액 2,200억원 건설공사에 법상 보건관리자 의무 선임 수는?

- 원칙적으로 공사금액 800(토목 1,000)억원 기준으로 보건관리자 1명 선임에서 1,400억이 추가되면 총 2,200억(토목 2,400억원)으로 2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또한, 공사금액이 2,20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가 1,200명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2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제4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 공사금액 2,200(토목 2,400)억원의 경우 보건관리자를 1명만 채용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보건관리자의 채용의무만을 면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보건관리의무 및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을 면제하고 있는 것은 아님으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Q2.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80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명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 및 영 별표5)에 의거 공사금액 800억 이상(토목공사는 1,000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수 600명 이상 공사현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건설현장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는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화는 특성이 있어 공사금액에 따라 우선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해당 공사금액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를 확인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여부를 재차 판단하여야 함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이상일 경우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 이때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말하는 것임.

Q3. 도급인(A)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1,000억원 건설공사 중 수급인(B)의 공사금액이 800억원인 경우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 수급인(B, 하수급인 포함)의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근로자가 6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5)에 따라 공사금액 800억 이상 이거나 상시근로자가 600명 이상인 수급인(B)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Q4. 도급인(A)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3,100억원 건설공사 중 수급인(B)의 공사금액이 700억원, 수급인(C)의 공사금액이 900억원, 수급인(D)의 공사금액이 600억원인 경우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은?

- 총 공사금액 3,100억원 중 수급인(C)의 공사금액이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는 800억 이상에 해당하므로 수급인(C)가 1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 도급인(A)는 수급인(B)의 공사금액 700억원 및 수급인(D)의 공사금액 600억원을 포함한 나머지 2,200억원의 공사금액에 대해 보건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함

Q5.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시 상시근로자의 의미는?

-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며,
- 건설현장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화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경우 총 연인원수를 총 공사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하므로,

- 건설현장의 경우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만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사금액 800억원 미만의 공사 중에서도 인력의 집중투입 등이 예상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투입인력이 6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상시근로자 수의 예측이 어려운 경우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시 활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수식(총공사계약금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 임금×12)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시행령 [별표 6]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3.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7. 삭제 (2017. 10. 17.)

Q6. 건설업현장에 보건관리자로 의사 또는 간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하는 기준이 있는지?

- 2015.1.1.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 중 공사금액 800억(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1명이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공사금액 800억(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 마다 1명씩 추가선임토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업에 공사금액별로 선임되는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의무선임 규정은 없습니다.

Q7.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사금액이 800억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일 때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겸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건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하고, 해당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할 것임.
- 건설업에서 보건관리자의 선임 해당 규정은 800억 이상으로 이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을 사용하는 공사규모로 해석되는 바, 800억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Q8. 상시근로자 약 1,500명인 건설업 본사가 2015.1.1.일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조 및 별표 5에 따라 2015.1.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현장(표준산업 분류코드 41, 42)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 본사는 일반적으로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산업 회사본부(표준산업 분류코드 71519)에 해당하므로 보건관리자선임 대상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임

Q9.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산업보건)에 따른 산업보건의 선임의무가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직의 선임의무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8조에 따라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산업보건직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2684호, 2013.8.6.) 제2조에 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합니다.

Q10. 보건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는?

-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으로 봄
- 이는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와 동일함

Q11. 건설업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관할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5항에 의거 건설현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선임 또는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노동관서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Q12.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위탁)시 관할노동관서 보고 서식은?

-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서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규정한 서식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2)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보건관리자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Q13. 건설현장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 건강관리실 및 침대, 구급용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건강관리실,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함

Q14. 건설현장에서 보건관리자 2명을 선임할 경우 1명을 full time으로 선임하고 나머지 1명은 4시간 시간 선택제로 선임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따로 보건관리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 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업종 및 사업장(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시행령 제13조제2항 준용)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응급조치, 보건상의 문제에 대한 적기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 보건관리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1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와 같은 소정근로시간(full-time)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보건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인원 및 시간 등이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할 것임

<보건관리자의 업무>

Q15. 사업장 의료실의 간호사가 감기환자에 대한 일반의약품 투여에 대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직원들이 흔히 치료받고 있는 경증의 내과환자, 피부질환자 및 외상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각 질병 및 상병의 종류(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에 대한 의료행위 허용범위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6호의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의약품업의 시행에 따라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만이 투여가 가능하므로 감기 등 가벼운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경우 일반의약품의 투여는 가능함. 다만, 투여는 단기간에 걸쳐야 하고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게 의뢰하는 등 상당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일정한 보건관리자의 의료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 기존에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행해져온 의료관행, 일반 의료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른 일반의약품은 투여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약사법시행령 제34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내 건강관리실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투여가 가능함

Q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 장비지원) 사업주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의사 또는 간호사 외의 자격을 가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실' 설치, 시설유지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2018.12.31) 제7조에 의해 지방관서에 선임 신고한 보건관리자의 인건비와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전담 보건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의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1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중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로 사용가능한 구급약품에 파스, 감기약, 해열제, 지사제, 연고 등이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일반인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편의점 및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품도 구급약품에 해당되는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2018.12.31) 별표2 6항목에 의해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구급약품이라도 특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구급약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Q1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중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서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한데, 의사 또는 간호사 외의 자격을 가진 보건관리자가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사용 및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제1항 제7호에 따라「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서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영양지도 및 관리, 이상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나 간호사 이외의 보건관리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을 것임

<벌칙>

Q19.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벌칙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2차 및 3차 위반 시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됨

Q20.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벌칙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 보건관리자 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최근 2년간 2차 위반 시에는 4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칙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 보건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및 최근 2년간 2차, 3차 위반 시 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관련법령

- 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 · 보건조치)
- 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 시행령 제26조(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 · 보건 조치)
- 시행규칙 제29조(협업체 구성 및 운영)
- 시행규칙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 · 보건조치 등)
- 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 · 보건점검)
- 시행규칙 제30조의3(화학물질)
- 시행규칙 제30조의4(안전 · 보건 정보제공 등)
- 시행규칙 제30조의6(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